Ⅰ. 개관

1.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 증가한 483.0조원으로 면성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수입¹⁾은 483.0조원으로, 국세수입 282.8조원, 세외수입 28.6조원, 기금수입 171.6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전망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조원(△3.1%) 감소한 282.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8.6조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수입은 전년도 당초계획 대비 6.0% 증가한 171.6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7 4	20	20	2021	본예신	· 대비	추경	대비
구 분	본예산(A)	추경(B)	예산안(C)	C-A	(C-A)/A	C-B	(C-B)/B
총수입	481.8	470.7	483.0	1.2	0.3	12.3	2.6
- 예산	319.9	308.8	311.4	△8.5	△2.7	2.6	0.8
(국세수입)	(292.0)	(279.7)	(282.8)	(△9.2)	(△3.1)	(3.1)	(1.1)
(세외수입)	(27.9)	(29.1)	(28.6)	(0.7)	(2.5)	(△0.5)	(△1.7)
- 기금	161.9	161.9	171.6	9.7	6.0	9.7	6.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분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788-4625)

¹⁾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이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 추경예산 대비 0.2%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러한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도 본예산 9.5%, 2020년도 본예산 9.1% 보다는 일부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 증가한 370.9조원이고 기금은 14.7% 증가한 184.9조원이다.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61)					2, 11,	
¬ н	20	20	2021	본예신	한 대비	추경	대비
구 분	본예산(A)	추경(B)	예산안(C)	C-A	(C-A)/A	C-B	(C-B)/B
총지출	512.3	554.7	555.8	43.5	8.5	1.1	0.2
- 예산	351.1	377.5	370.9	19.8	5.6	-6.6	-1.7
- 기금	161.2	177.2	184.9	23.7	14.7	7.7	4.3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분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부처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7.8조원), 보건복지부(7.6조원), 국토교통부(6.6조원), 고용노동부(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4.0 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94.0%), 원자력안전위원회(39.1%), 조달청(38.7%), 기획재정부(33.2%), 중소벤처기업부(29.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부처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억워, %)

7 8	2020		2021안	증감	
구 분	본예산(A)	추경예산	(B)	(B-A)	증감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102	102	순증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181	180	58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60		△123	△06.0
감사원	1,356	1,306	1,358	2	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365	365	순증
경찰청	116,165	113,604	119,530	3,365	2.9
고용노동부	305,139	407,868	354,808	49,669	16.3

	20	20	2021안	위: 억원, %)	
구 분		2020 본예산(A) 추경예산		증감	スプトロ
고저기괴이이희		추경예산	(B)	(B-A)	증감율
공정거래위원회 교하기스저브투시브	1,373	1,379	1,466	93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4,122	172,456	176,439	12,317	7.5
관세청	5,812	5,711	6,024	212	3.6
교육부	773,871	757,317	763,332	△10,539	△1.4
국가보훈처	56,796	56,589	57,866	1,070	1.9
국가인권위원회	378	367	383	5	1.3
국가정보원	6,895	6,895	7,460	565	8.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100	6,020	6,433	333	5.5
국민권익위원회	901	872	909	8	0.9
국방부	352,477	343,900	377,458	24,981	7.1
국세청	18,374	17,892	18,679	305	1.7
국토교통부	501,317	505,460	567,249	65,932	13.2
국회	6,787	6,645	6,989	202	3.0
금융위원회	8,864	34,828	17,200	8,336	94.0
기상청	3,909	3,762	4,296	387	9.9
기획재정부	233,907	262,409	311,637	77,730	33.2
농림축산식품부	157,743	157,617	161,324	3,581	2.3
농촌진흥청	10,249	10,161	10,876	627	6.1
대법원	20,107	19,707	20,605	498	2.5
대통령경호처	916	891	929	13	1.4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90	948	980	△10	△1.0
문화재청	10,911	10,526	11,241	330	3.0
문화체육관광부	64,803	67,345	68,273	3,470	5.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25	321	326	1	0.3
방송통신위원회	628	614	521	△107	△17.0
방위사업청	166,719	157,550	170,642	3,923	2.4
법무부	38,972	37,675	41,573	2,601	6.7
법제처	403	409	412	9	2.2
병무청	2,400	2,323	2,436	36	1.5
보건복지부	825,269	890,310	901,536	76,267	9.2
산림청	22,258	22,268	24,303	2,045	9.2
산업통상자원부	94,367	102,587	111,592	17,225	18.3
새만금개발청	3,309	3,201	2,833	∆476	△14.4
소방청	2,011	2,033	2,206	195	9.7
식품의약품안전처	5,592	5,546	6,044	452	8.1
여성가족부	10,950	10,878	11,466	516	4.7
외교부	27,439	25,757	28,432	993	3.6
 원자력안전위원회	1,111	1,084	1,545	434	39.1
인사혁신처	197,975	197,885	213,587	15,612	7.9
 조달청	1,616	3,029	2,241	625	38.7
조소벤처기업부	133,640	251,792	173,493	39,853	29.8
			-, 3, 1, 3	5,555	- /.0

(61)						
7 8	2020		2021안	증감		
구 분	본예산(A)	추경예산	(B)	(B-A)	증감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301	7,251	3,853	∆3,448	△47.2	
통계청	4,833	4,729	4,161	△672	△13.9	
통일부	14,242	14,096	14,607	365	2.6	
특허청	4,988	4,977	5,237	249	5.0	
해양경찰청	14,904	14,652	15,425	521	3.5	
해양수산부	56,029	54,815	61,440	5,411	9.7	
행정안전부	555,471	681,197	568,275	12,804	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388	3,187	4,136	748	22.1	
헌법재판소	527	519	530	3	0.6	
환경부	95,393	97,736	110,777	15,384	16.1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분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예산안의 회계·기금별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지출 증가액은 15.5조원으로 회계·기금 중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1.0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1.0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8조원)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기금의 경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4.8조원), 주택도시기금(4.0조원), 고용보험기금(3.2조원), 국민연금기금(2.9조원)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회계·기금별 예산안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	20	2021안	증감	
T E	본예산(A)	추경예산	(B)	(B-A)	증감율
일반회계	2,960,386	3,234,885	3,115,702	155,316	5.2
특별회계 소계	550,799	539,722	593,252	42,453	7.7
- 교도작업특별회계	705	705	696	△9	△1.3
- 교통시설특별회계	130,213	118,483	140,483	10,270	7.9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92,328	92,123	100,618	8,290	9.0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548	3,548	6,092	2,544	71.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328	68,013	72,587	5,259	7.8
- 등기특별회계	2,407	2,357	2,451	44	1.8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25	20,745	25,611	4,886	23.6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6	1,069	1,397	271	24.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506	37,299	42,949	6,443	17.6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941	2,940	2,965	24	0.8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40,316	39,900	36,547	∆3,769	△9.3

그 2020 2021안				<u>(단위: 억원, %</u> 조가		
구 분			2021안	증감	X710	
	본예산(A)	추경예산	(B)	(B-A)	증감율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338	3,338	2,223	△1,115	△33.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388	3,187	4,136	748	22.1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7	187	767	580	310.2	
- 환경개선특별회계	58,590	59,697	68,774	10,184	17.4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65	19,801	19,878	△187	△0.9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사업특별회계	16,967	15,466	14,353	△2,614	△15.4	
- 우편사업특별회계 - 조달특별회계	39,254	38,669	39,191	△63	△0.2	
- 소설득설외계 - 경찰병원	1,616	3,029 774	2,241 781	625	38.7 0.4	
- 국립공주병원	778 159	158	158	3 △1	0.4 △0.6	
- 국립과천과학관	339	338	335	$\triangle 1$ $\triangle 4$	△0.0 △1.2	
- 국립나주병원	208	207	209		0.5	
- 국립마산병원	196	195	198	1 2	1.0	
- 국립목포병원	190	116	121	4	3.4	
- 국립부곡병원	199	198	200	1	0.5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748	701	650	△98	∆13.1	
- 국립재활원	602	590	509	△93	$\triangle 15.4$	
- 국립정신건강센터	404	402	407	3	0.7	
- 국립중앙과학관	366	364	339	△27	△7.4	
- 국립춘천병원	147	146	149	2	1.4	
- 특허청	4,988	4,977	5,237	249	5.0	
기금 소계	1,611,318	1,796,469	1,848,946	237,628	14.7	
- 고용보험기금	154,986	226,137	186,714	31,728	20.5	
- 공공자금관리기금	134,086	140,585	182,833	48,747	36.4	
- 공무원연금기금	196,030	196,030	211,544	15,514	7.9	
- 공적자금상환기금	132	132	160	28	21.2	
- 과학기술진흥기금	623	623	972	349	56.0	
- 관광진흥개발기금	11,687	12,039	13,115	1,428	12.2	
- 국민건강증진기금	33,700	33,878	34,160	460	1.4	
- 국민연금기금	274,110	274,129	303,410	29,300	10.7	
- 국민체육진흥기금	14,779	15,442	15,857	1,078	7.3	
- 국유재산관리기금	10,810	9,310	10,089	△721	<u> </u>	
- 국제교류기금	679	598	651	△28	△4.1	
- 국제질병퇴치기금	657	657	428	△229	△34.9	
- 군인복지기금	6,421	6,421	6,074	△347	△5.4	
- 군인연금기금	34,661	34,661	35,430	769	2.2	
- 근로복지진흥기금	1,453	2,706	1,828			
				375	25.8	
- 금강수계관리기금	1,208	1,208	1,183	△25	△2.1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13	2,513	2,484	△29	△1.2	
- 남북협력기금	12,056	12,039	12,433	377	3.1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632	21,751	22,544	912	4.2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99	506	506	△693	△57.8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6,303	26,263	23,922	△2,381	△9.1	

					위: 억원, %)
구 분			2021안	증감	X710
· –	본예산(A)	추경예산	(B)	(B-A)	증감율
- 농지관리기금	15,492	15,339	16,891	1,399	9.0
- 대외경제협력기금	12,320	10,320	13,597	1,277	10.4
- 문화예술진흥기금	2,893	3,316	3,162	269	9.3
- 문화재보호기금	1,440	1,440	1,342	∆98	△6.8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277	1,617	1,623	△654	△28.7
- 방송통신발전기금	9,807	11,917	12,478	2,671	27.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2	1,012	1,050	38	3.8
- 보훈기금	1,439	1,433	1,459	20	1.4
- 복권기금	34,976	35,226	40,279	5,303	15.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9,689	49,689	54,408	4,719	9.5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635	635	809	174	27.4
- 사학진흥기금	2,627	2,627	2,651	24	0.9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2	402	439	37	9.2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9,061	69,967	81,210	12,149	17.6
- 석면피해구제기금	216	216	226	10	4.6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1,463	95,697	46,773	15,310	48.7
- 수산발전기금	5,298	5,268	5,400	102	1.9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27	827	845	18	2.2
- 양성평등기금	4,062	4,038	4,219	157	3.9
- 언론진흥기금	228	228	212	∆16	△7.0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08	808	802	∆6	△0.7
- 영화발전기금	1,015	1,302	1,169	154	15.2
- 원자력기금	2,895	2,895	3,234	339	11.7
- 응급의료기금	2,365	10,357	2,464	99	4.2
- 임금채권보장기금	4,868	4,868	7,304	2,436	50.0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6	526	502	△24	∆4.6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549	5,257	5,211	∆338	△6.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5,975	5,936	6,779	804	13.5
- 전력산업기반기금	20,434	26,578	27,669	7,235	35.4
- 정보통신진흥기금	9,276	13,537	14,036	4,760	51.3
- 주택도시기금	295,828	302,740	335,399	39,571	13.4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0,209	77,214	72,660	12,451	20.7
- 지역신문발전기금	93	93	93	0	0.0
- 청소년육성기금	1,359	1,323	1,395	36	2.6
- 축산발전기금	9,278	9,243	9,475	197	2.1
- 한강수계관리기금	4,950	4,950	5,346	396	8.0
즈· 1 초기추 기즈	-,,,,,	-,,,,,	2,0 20	5,0	

주: 1. 총지출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분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2021년도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72.8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전년도 본 예산 대비 42.3조원 악화되고,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 적자(GDP 대비 5.4%)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2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신기)	<u> </u>			
7 日	2020		2021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구 분	본예산(A)	추경예산(B)	예산안(C)	(C-A)	(C-B)
통합재정수지	△30.5	△76.2	△72.8	△42.3	3.4
(GDP 대비)	(△1.5)	(△3.9)	(△3.6)	(△2.1)	(0.3)
관리재정수지	△71.5	△111.5	△109.7	△38.2	1.8
(GDP 대비)	(△3.5)	(△5.8)	(△5.4)	(△1.0)	(0.4)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분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수치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 필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국가채무

2021년 국가채무²⁾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7.3조원, 추경예산 대비 105.6 조원 증가한 95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7.3%p, 추경예산 대비 3.2%p 증가한 47.1%로 계획하고 있다.

2021년 국가채무의 전년 대비 큰 폭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가 주도하였다. 2021년 중앙정부채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1.8조원 증가한 925.0조원이며, 그 중 국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2.1조원 증가한 922.6조원으로 계획되었다. 그 밖에 차입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조원 감소한 2.3조원, 지방정부순채무는 4.5조원 감소한 27.5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1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611.	고 단, /0, /0p/
7 日	20	20	2021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구 분	본예산(A)	추경(B)	예산안(C)	(C-A)	(C-B)
국가채무	805.2	846.9	952.5	147.3	105.6
(GDP 대비)	(39.8)	(43.9)	(47.1)	(7.3)	(3.2)
중앙정부채무	773.2	814.9	925.0	151.8	110.1
국채	770.5	812.1	922.6	152.1	110.5
차입금	2.6	2.8	2.3	△0.3	△0.5
국고채무부담행위	0.0	0.1	0.1	0.1	0.0
지방정부순채무	32.0	32.0	27.5	△4.5	△4.5

주: 1.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21}년 예산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기존 정부 보도자료 등과 상이

²⁾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인 D1을 의미한다.

3.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2021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가 가장 큰 규모(199.9조원)를 차지하며, 이하 일반·지방행정(86.5조원), 교육(71.0조원), 국방(52.9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2대 분야 중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규모는 보건·복지·고용(19.4조원), 일반·지방행정(7.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5.4조원), R&D(3.0조원) 등의 순서로 크게나타나고 있다. 반면,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2.9%), 환경(16.7%), R&D(12.3%), SOC(11.9%), 보건·복지·고용(10.7%)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그님	2020	2021	~	증감		
구분	본예산(A)	예산안(B)	В-А	(B-A)/A		
1. 보건·복지·고용	180.5	199.9	19.4	10.7		
(일자리)	(25.5)	(30.6)	(5.1)	(20.0)		
2. 교육	72.6	71.0	△1.6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5.4)	(53.3)	(△2.1)	(△3.7)		
3. 문화·체육·관광	8.0	8.4	0.4	5.1		
4. 환 경	9.0	10.5	1.5	16.7		
5. R&D	24.2	27.2	3.0	1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7	29.1	5.4	22.9		
7. SOC	23.2	26.0	2.8	11.9		
8. 농림·수산·식품	21.5	22.4	0.9	4.0		
9. 국 방	50.2	52.9	2.7	5.5		
10. 외교·통일	5.5	5.7	0.2	4.3		
11. 공공질서·안전	20.8	21.8	1.0	4.4		
12. 일반·지방행정	79.0	86.5	7.5	9.5		
(지방교부세)	(52.2)	(51.8)	(△0.4)	(△0.8)		

자료: 기획재정부

4. 2021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

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은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③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④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다.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대응을 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유지 지원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시장을 안정화시키고, 4+4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소비활력을 제고하며,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를 확충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 금융 등을 통해 수출활력을 제고하며,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 투자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R&D·인재육성·금융·조달 등 각종 영여에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DNA·BIG3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정부는 경제위기 및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응하여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후·환경변화, 국민위해요인 증가, 외교·안보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도 투자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역의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를 지원하고, 재해예방 및 국민 생명·인권 보호에 역점을 두며, 깨끗한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軍사기진작 지원을 실시하며, 전략적 외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도 예산안 투자의 중점]

투자중점	세부과제	주요내용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고용 유지 및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확대(2 → 45만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신규 인원 9만명) 직접일자리(인돌봄 3.3만개, 장애인일자리 2.5만개, 자활 근로 5.8만개 등)
	4+4 바우처·쿠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비활력 제고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 확충	- 4+4 바우처·쿠폰(숙박 150만명, 체육 60만명 등) -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5→18조원) -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지방공항 중심 2개 권역 공모) - 모태펀드 출자(버팀목 1,800억원, 혁신창업 1,000억원 등) - 스마트시티 확산 +1,075억원(981억원→2,056억원) - 그린리모델링(공공건축물 +2,276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3,545억원)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 제고	- 무역보험기금 인프라 수주 및 중소기업 지원 5.4조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3,845개社 - KOTRA 해외지사화(5,000→5,500개社, 356억원)
	지역발전투자,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교형발전 본격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7,259억원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계 10대 투자사업) 생활SOC 11.1조원(안전한 삶터 구축 4.4조,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1.1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R&D 투자(한국판 뉴딜 1.9조원, 소재·부품·장비 2.2조원 등) 혁신 금융 투자 8,300억원, 보증 980억원, 융자 9,721억원 혁신조달 공공부문 시범구매 확대 등(99→500억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Data: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공공데이터 4.4만개 개방이용활성화 등 Network: 5G융합서비스, 5G기반 스마트업무환경 AI: AI바우처 1·2·3차 全산업 분야 200개사 지원 등 BIG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태양광·풍력: 녹색혁신금융 국민주주 프로젝트(370억원), 녹색보증(500억원) 수소산업: 소규모 생산기지 9개소 추가(8→17개소) 등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아파트 225만호 스마트전력 계량기 구축 등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338개) 중심 기술자립화 지원 등 5개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확대(5,500→6,000개사)

투자중점	세부과제	주요내용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5.7만 가구) 등 건강보험 국고보조비율 14→14.3% 공적임대주택 당초 '21년 목표(18.7만호) 대비 0.3만호, '20년(18.1만호) 대비 0.9만호 추가 공급
포용적 고용·사회 안전망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38만명) 월 30만원 지급 - 농업 공익직불제 ha당 연간 205~100만원(0.5ha이하 120만원) 지원
공고화	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全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고용보험 예술인·특고 신규 지원(46.5만명) 구직급여 수급인원 증가(137 → 164만명) 산재보험급여 특고 5개 직종(27만명) 추가('20.7월)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 신혼·청년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9.7→11만호) -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노인·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무료접종(1,500만명) - 호흡기클리닉 2배 확대(500→1,000개소) - 다부처 연계 전주기 신약개발(129개 과제)
국민	재해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3,700→8,227개 - 클린사업장 미인증 위험기계기구 교체 4,911대 - 자살예방전담인력 207→314명
안전과 삶의 질 제고	깨끗한공기·맑은물· 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만 → 33만대(160만원, 60%) - 스마트 지방상수도 72개 지자체 착공, 44개 지자체 완공 - 산단 미세먼지 차단숲(38개소, 465→707억원) 등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軍사기진작 지원	- F-35A, KF-X(보라매), 잠수함(장보고Ⅲ) - 병봉급 인상(12.5%), 급식·피복단가 인상 등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67억원(신규) - 신남북방 프로그램 +20개, +510억원(+28.8%)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제34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18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성과계획서」,「성인지 예산서」,「조세지출예산서」,「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등 6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국가재정법」제34조)		세골성극
제1호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예산안 첨부서류」p.6.
제2호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5권)
제2호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예산안 첨부서류」p.1237.
제3호	계속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p.313.
제3호의2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현황	「예산안 첨부서류」p.323.
제4호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안 첨부서류」p.1061.
제5호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p.1069.
제5호의2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명시 대상 사업	「예산안 첨부서류」p.1081.
제6호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예산안 첨부서류」p.1087.
제7호	국유재산 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p.1215.
제8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9호	성인지 예산서	별도 책자
제10호	조세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TII.4.4.—	독립기관·감사원 세출예산요구액 감액 규모·	મો - - ગો - ો
제11호 	이유 및 해당 기관장 의견	별도 책자
제13호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예산안 첨부서류」p.1221.
제14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별도 책자
제15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예산안 첨부서류」p.1227.
제16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	
세10오	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예신안 첨부서류」p.1233.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예산정책처 • 13

윤여문 예산분석관(doors82@assembly.go.kr, 6788-4625)

다음 「국가재정법」 제71조는 다음 표와 같이 총 7종의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 류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성과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등 2개 문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책자로 통합하여 제출하고 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현황]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제34조)	첨부서류명	제출형식
제1호	기금조성계획	「기금안 첨부서류」p.7.
제2호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기금안 첨부서류」p.7.
제3호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기금안 첨부서류」p.1.
제4호	성과계획서	별도 책자
제5호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전입·전출명세서	「기금안 첨부서류」p.1033.
제6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별도 책자
제7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기금안 첨부서류」p.1037.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국가재정법」 등은 이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별개로 각종 재정 관련 의안·문서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관련 의안으로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동의안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이 있다.

다음 관련 문서로는 「국가재정법」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담금관리 기본법」제6조의2에 따른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에 따른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등이 있다.

^{1) 2021}년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다.

[2021년도 예산안 관련 의안·문서 현황]

구분	법적 근거	관련 의안·문서명
	「국가재정법」제92조	국가보증채무 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
	4/MOED MOET	환기금채권 등 2건)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무역보험법」제8조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77260 7102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첨부서류(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기계이다 제/포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등)
	「국가재정법」제9조의2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법」제9조의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서	「국가재정법」제9조의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및 관련 의안·문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하에서는 이 중 주요 서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상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이다. 정부는 같은 법에 따라 2004년²⁾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2007년부터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크게 ① 경제·재정 여건 분석, ②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및 재정총량 운용계획, ③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④ 기타 재정혁신방향제시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목차는다음과 같다.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목차]

제1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념과 연혁
- 2.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제2부 2020~2024년 경제·재정운용 여건

- 1. 대내·외 경제 여건
- 2. 재정운용 여건

제3부 2020~2024년 재정운용 방향

-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제4부 12대 분야별 투자방향

제5부 재정혁신 방향

- 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 1) 지출 구조조정
 - 2) 지출구조 개선
 - 3) 협업예산 활성화
- 2. 수입기반 확충
 - 1) 비과세·감면 정비
 - 2) 탈루소득 과세 강화

²⁾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법」상 근거 없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2006년 10월 「국가 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3) 재원의 효율적 활용
- 3. 투자재워 다변화
 -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 국유재산 활용 확대
- 4. 재정위험 관리 체계화
 - 1) 중장기 재정위험 관리
 - 2) 국고채 안정적 관리
- 5. 재정관리체계 혁신
 - 1) 성과관리제도 개편
 - 2) 국가자산 종합관리체계 구축
 - 3) 혁신지향 공공조달 본격 추진
 - 4) 공공계약제도 개선
- 6.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1) 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공개 확대
 - 2) 국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확산

그 밖에 「국가재정법」3)은 중기 재정운용과 관련한 자료로서 ① 전년도 국가재 정운용계획 평가·분석 보고서,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③ 국가채무관리계획, ④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⑤ 장기재정전망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자의 Ⅲ. 재정총괄 분석 내 1.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목차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 분석보고서

^{2.} 제73조의3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예산제도'란「양성평등기본법」제16조4)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5)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는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국가재 정법」제26조6) 및 제68조의27)에 따라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8)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9)의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한 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른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4)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 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주요 목차]

I. 개요

- 1. 의의
- 2. 전체 규모 및 '20년 예산과의 비교
- 3. 주요 사업 4. '21년 예산안 작성의 특징

Ⅱ.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각 중앙관서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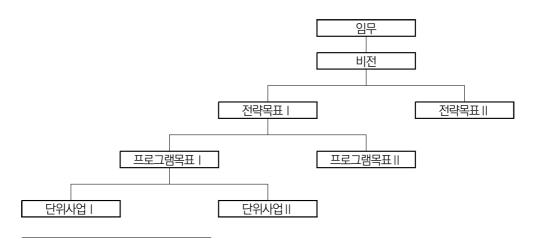
- 1. 성평등 목표
- 2.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 3. 사업별 설명자료: 성별 수혜 분석 및 성과목표 제시 포함

이러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3. 성과계획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통해 부처별·사업별로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그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99년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3년 22개 부처 대상 우선 시행을 거쳐 2006년 모든 부처에 도입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의 핵심 문서인 성과계획서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서 2009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계획서는 각 중앙관서별 임무·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11) 및 프로그램목표12)를 설정한 후 그 하위에 단위사업을 배치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10) 「국가재정법」

-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1) 기관이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목표이다.
- 12)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 당 1개의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한다.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55개 부처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182개 전략목표, 468개 프로그램 목표, 1,75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상 부처 및 전략목표·성과목표]

(단위: 개)

				(411 1)
구분	대상부처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2021(A)	55	182	468	1,750
2020(B)	54	180	465	1,759
증감(A-B)	1	2	3	△9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성과계획서(총괄편)」, p.11.

한편,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은 각각 그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의 프로그램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총 673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총 4.669개이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단위: 개)

회계연도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외계인도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1(A)	468	673	1,750	4,669
2020(B)	465	670	1,759	4,696
증감(A-B)	3	3	∆9	△2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성과계획서(총괄편)」, p.19. 및 p.24.

정부는 이러한 성과계획서에 따라 재정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성과보고서로 작성한 후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 4개 중 하나로서 국회에 제출한다.

4.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종합 계획으로서, 다음 연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역할을 수행한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법」 13)에 따라 2012년부터 작성되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의 하나로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①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② 국유재산 집행유형별·중 앙관서별·회계별 관리·처분 세부계획, ③ 국유재산 처분 기준, ④ 국유재산특례 종합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주요 정책과제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 1. 적극적 개발 및 경제 역동성 제고
- (1) 국유지 토지개발사업 본격 추진
- (2)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 (3) 국유재산을 활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 (4) 공공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 2. 공익목적 활용 및 국민편익 증진
- (1)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 (2)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 편의 개선
- (3) 국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 본격화
- (4)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국유재산법」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효율적 활용 및 재산가치 증대
- (1)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강화
- (2) 행정재산 관리 강화
- (3) 공용재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제고
- (4) 노후 국유건물 등 저활용 재산의 활용 촉진
- 4.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 (1)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2)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 (3)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또한 국유재산의 집행유형·재산유형별 관리·처분 세부계획을 금액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상 관리·처분 세부계획 요약]

(단위: 억원)

구분	토지	건물	기타 ¹⁾	합계
취득	22,950	39,743	51,041	385,123
처분	14,640	1,315	718	294,564
사용승인	1,675	22	-	1,697
사 용종 료	558	148	14	720
관리수입	3,930	1,202	26	5,159

주: 1) 기타는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한 결과를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로 작성한 후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서류 중 하나인재무제표의 부속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한다.

5.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가.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란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조세지출14)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하는 보고서이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15) 등에 따라 1999년부터 작성·공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16)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202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주요 목차]

I.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요

Ⅱ. 연도별 조세지출 개요

Ⅲ. 연도별 조세지출 분석

- 1.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2.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3.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4. 조세특례제한법 분류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 5.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6. 주요 조세지출 현황
- 7. 관리대상 유형별 조세지출 현황 및 분석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를 통한 각종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16) 「}국가재정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Ⅳ. 2020년 조세지출 정비 현황

- 1. 2020년 조세지출 제도 정비
- 2.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조정

V.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 2.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별 내역
- 3. 경과규정 항목별 세부내역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세감면액 규모는 56.8조원(국세감면율 15.9%) 으로서 전년도 당초 전망액 51.9조원(국세감면율 15.1%) 대비 약 4.9조원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는 2020년 국세감면액 전망액을 53.9조원(국세감면율 15.4%)으로 약 2.0조원 증액 수정하고 있다.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주요 내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	20	2021
 	실적	실적	전망	수정전망	전망
국세수입총액(A)	2,935,704	3,066,963	2,920,391	2,968,802	3,005,354
국세감면액(B)	439,533	495,700	519,097	538,905	568,277
국세감면율(B/(A+B))	13.0	13.9	15.1	15.4	15.9

주: 수정전망이란 차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당해연도 전망치를 수정 제시하는 것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p.6.

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3개 연도(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의 국유재산특례지출¹⁷⁾ 실적·전망을 집계·분석하는 보고서이다.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⁸⁾ 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16년도 예산안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재정법」¹⁹⁾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 주요 목차]

- I.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의 개요
- Ⅱ. 국유재산특례제도 운용 현황
- Ⅲ. 연도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및 분석
- 1. 총괄 현황
- 2. 특례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및 분석
- 3. 재산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및 분석
- 4. 세출분야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및 분석
- 5. 소관 중앙관서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및 분석
- 6. 지원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및 분석

〈참고〉국유재산특례지출 항목별 내역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를 통한 각종 재정 지원을 의미한다.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 규모는 9,968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계획액 9,688억원 대비 약 280억원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2020년 계획액을 1조 2,029억원으로 약 2,341억원 증액수정시키고 있다.

[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78	2019	2020		2021
十七	실적	계획	수정전망	계획
국유재산특례지출	1,031,202	968,800	1,202,920	996,848
사용료 등 감면	587,096	778,475	709,364	814,573
양여	444,106	190,325	493,556	182,275

주: 수정전망이란 차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당해연도 전망치를 수정 제시하는 것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